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957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554	김윤덕의원 등 10인	'24.8.5.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11.20.)
	2202934	정부제출	'24.8.19.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11.20.)
	2204614	박정하의원 등 11인	'24.10.8.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11.20.)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5.)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 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설립타

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 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 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 야 한다.
- 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 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 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행정기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 행정기 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 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 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국립 박물관 ·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 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 · 미술관의 설립 ·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제12조의2(공립 박물관·공립 미 제12조의3(공립 박물관·미술관 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 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 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 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의 설립</u>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 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 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 미술관의 설립 ·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 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 의를 마친 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 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 미술 관의 설립 · 운영계획을 수립하 여 시 · 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 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 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 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 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 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u> 제4 6 비 씨는 기년 6기의 될지</u>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u></u>
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등록 등)	_
	_
	_
	_
	_
	_
	_
	_
	_
시 • 도지사	_
	_
	_
	_
	_
	_
	_
	_
	_
	_

제9하에 따르 시저더가이 저키